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 및  
활용에 대한 연구

2008.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성장촉진지역의 개념	3
1. 법적 규정	3
2. 이론적 개념	4
3. 성장촉진지역 규정의 구성요소	4
III. 선행 연구 및 지표 검토	6
1. 신활력지역 선정 지표 및 방법 (행안부)	6
2. 전국 4개 유형 지역구분 기준 및 방법 (균형위)	10
3. 개발촉진지구 선정 지표 및 방법 (국토부)	13
4. 낙후도 지표 (KDI)	16
5. 검토 결과 및 종합	18
VI.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20
1. 선정기준	20
2. 선정결과	25
V. 성장촉진지역 지표 활용 방안	26
1. 분석 결과	26
2. 성장촉진지역 활용 방향	31
부록 1. 분석 결과	32
부록 2. 외국의 낙후지역 선정기준 종합	42

참고문헌 ..... 43

# I. 서론

## 1. 연구목적

### □ 연구의 배경

- 신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축으로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감안하여 “기초생활권” 정책을 추진
  - 신정부 지역발전전략은 「5+2 광역경제권」을 핵심축으로 상정하고 다른 축으로 「기초생활권」과 「초광역개발권」등을 두어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보완(균형위, 2008.12.15)
-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은 특성화된 개발을 통하여 시·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기초생활권 발전은 종래의 낙후 및 소외지역 등에 대한 고려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음
- 현재 입법예고된 지역발전특별법(정부안)에서 효과적인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의 법적 정의에 맞는 지역 선정기준의 마련 필요
  -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개발대상도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개별법에 의거하여 지역이 선정
  - 이에 비해 성장촉진지역은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 성장촉진지역의 선정 기준만 제시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만 개정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음

### □ 연구목적

-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은 성장촉진지역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의 효

- 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장촉진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함에 목표를 둠
  -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개념과 각종 낙후도 지표를 검토하여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지표로 활용
  - 특히, 인구,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후지역의 선정기준을 개발코자 함

## 2. 연구범위 및 방법

### □ 연구범위

- 국내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을 검토함으로써 낙후지역 선정기준 및 지표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성장촉진지역 지표개발과 관련하여 부문별 대표지표를 개발하고, 부문별 지표를 통합한 종합지표를 산출
- 개발한 지표를 232개 시·군·구에 적용함으로써 지표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함

### □ 연구방법

- 성장촉진지역의 요체가 되는 낙후성의 개념 정립을 토대로 낙후성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이론화작업을 수행함
- 기존 낙후지역 선정기준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성장촉진지역 선정지표를 비교 검토
- 새로운 성장촉진지역 선정지표를 적용하여 하위 30%에 해당되는 시·군·구를 파악

## II. 성장촉진지역의 개념

### 1. 법적 규정

#### □ 지역발전특별법(정부안)에서의 낙후지역

- 현재 지역발전특별법이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수정, 대체하고자 국회에 상정
- 지역발전특별법에서는 낙후지역과 관련하여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의(지역발전특별법 제2조)
  -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달리 특수한 이유로 인한 저발전지역은 “특수상황지역”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역이 발전하지 않은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분

#### ※ 낙후지역의 법적 규정(지역발전특별법 제2조)

7.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8.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 이론적 개념

- 국가내에서 지역간 격차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나타나고 있음
  - 자연조건이나 노동력조건 등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잠재력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간 발전 격차가 존재
- 일반적으로 낙후지역(distressed area)은 발전지역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자연조건이 열악하고 경제기반이 부족하며 인구의 유출이 심하고 재정이 빈곤하여 발전지역에 비해 활력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을 의미
- 네덜란드 경제학자 Leo Klaassen에 따르면 낙후지역은 “주어진 한 시점에서 경제적인 몇 가지 측면이 타 지역, 특히 국가 전체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지역”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낙후지역은 국가 내 지역간 격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으로 낙후지역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임
  - 상대적 개념: 낙후지역은 국가내 다른 지역보다 발전정도가 더딘 지역을 의미. 국가 발전 수준에 걸맞춰 지역주민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경제적, 사회적 편익인 National minimum에 미달하는 지역을 의미
  - 가변적 개념: 국가의 발전정도에 따라 national minimum이 가변적이므로 낙후지역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항상적으로 변함

## 3. 성장촉진지역 규정의 구성요소

### □ 성장촉진지역의 구성요건

- 이론적, 법적 개념정의를 검토한 결과 성장촉진지역의 구성요소는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함

- ① 지역특성 요건
- ② 정부지원 요건
- ③ 특수상황지역과의 차별성

### ① 지역특성 요건

- 성장촉진지역의 선정요건을 살펴보면 소득, 생활여건,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또는 국가 평균)에 비하여 낮은 지역을 의미
- 구체적인 선정요건은 소득, 인구, 재정상태를 의미
- 재정상태는 해당 지역의 경제수준을 반영하는 대리(proxy)변수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력 악화로 자구 노력을 수행하기 힘든 경우를 의미
  - 지역내 사회경제의 붕괴로 세수입 감소로 재정 악화를 겪는 지자체는 재정적 측면에서 자립 역량이 부족하여 저발전을 심화시키는 저발전의 발전이라는 누적적 과정을 야기
  - 따라서 재정상태는 발전수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함

### ② 중앙정부 지원요건

- 지역발전특별법(안)에 따르면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는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 등의 특별한 배려가 다른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생활 관련 기반시설에도 행해질 수 있으나 이보다는 도로, 상수도 등 경제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반시설의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함

### ③ 특수상황지역과의 차별성

- 지역발전특별법에서는 특수상황지역과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별
- 특수상황지역은 특정 여건으로 인하여 지역 발전이 저해된 경우에



국가 등이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하는 지역을 의미

- 여기서 특정 여건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 경우로 접경지역이나 도서지역 등을 의미

### Ⅲ. 선행 연구 및 지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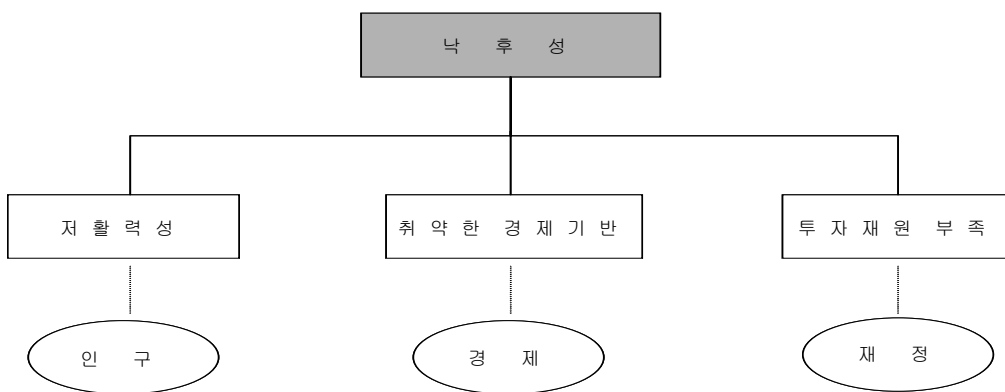
#### 1. 신활력지역 선정 지표 및 방법 (행안부)

##### 1) 평가지표

###### □ 낙후성의 구성

- 낙후성을 ‘저(低)활력성, 경제기반의 취약성, 재정의 열악성’으로 개념 정의하고 이를 인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재정적 측면으로 분해

<그림 1> 낙후성의 구성



###### □ 신활력의 선정지표

- 상기 저활력성, 취약한 경제기반, 투자재원부족 등 3개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각각 인구, 경제, 재정 등에서 4개 지표 이용

- 저활력을 나타내는 인구지표는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등 2개 지표 사용

<표 1> 신활력 선정지표

부 문	지 표	측정방법
인 구	○ 인구변화율	- 연평균 인구변화율
	○ 인구밀도	- 인구/면적
경 제	○ 소득세할주민세	- 소득세할 주민세(최근3년평균)
재 정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기준재정수요(%)

- 인구지표로는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를 지표로 활용
  - 살기좋은 곳에 인구가 모이고 경제활동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고 밀도가 높아짐을 감안하여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를 측정지표로 선정
  - 인구변화율 : 인구의 플로우(flow) 측면을 포착한 지표로, 우리나라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저발전되어온 지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35년 동안(1970~2005년)의 연평균 인구변화율(r)을 산출

$r = (P_t - P_0) / P_0n$ <p>단, r은 연평균인구변화율  <math>P_0</math>는 기준년도의 인구, <math>P_t</math>는 비교년도의 인구, n은 30년임</p>
---

- 인구밀도 : 인구의 스톡(stock) 측면을 포착한 지표로 인구가 특정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회를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지표로 채택(2005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면적 대비 인구비율로 산정)

- 경제기반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활용
  - 경제기반을 측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지표로는 1인당 GRDP나 1인당 소득일 것이며, 경제적 활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실업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시·군·구에서 해당 자료들이 산출되고 있지 않으며 GRDP 추계도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에 한하여 부정기적으로 산출되어 활용이 불가능
  - 그에 따라 신활력지역 선정에 있어서 대리변수로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일정율을 부과하는(「지방세법」 제172조) 소득세할 주민세를 사용(최근 3년간의 평균)
- 재정측면으로는 재정력지수를 사용
  - 재정자립도가 교부세 및 보조금, 양여금 등이 감안되어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이 커지면, 지방세에서 수입이 많은 지역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부정확하므로 재정력지수를 사용
  - 재정력 지수 :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최근 3년 동안의 평균)

$$\text{재정자립도} = (\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일반회계세입총계}) \times 100$$

(최근 3년간 평균)

□ 지표의 출처

<표 2> 신활력지표 출처

부 문	지 표	측정방법	비 고
인구	○ 인구변화율	- 연평균인구변화율	통계청 (1970-2005년)
	○ 인구밀도	- 인구/면적	통계청 (2005년)
경제	○ 소득세할주민세	- 소득세할 주민세	FY세정연감 (2003-2005년)
재정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기준재정수요	행안부 (2003-2005년)

## 2) 종합지수 산출방법

- 지역의 낙후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낙후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종합지수(aggregate indicator) 산출 필요
- 지표별 단위가 다르므로 표준화작업 수행
  - 단위정상법(unit normal scaling)을 사용하여 지표를 표준화하여 표준화된 값(Z-Score)을 산출
  - 단위정상법은 변수값들을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되게 변환하는 통계적 기법

$$Z_i = \frac{E_i - \bar{X}}{S} \quad \text{단, } S \text{는 표준편차}$$

- 가중치는 인구, 경제, 재정 등 3개 부문에 1 : 1 : 1의 가중치 부여

$$\text{종합지수} = (\text{인구변화율} + \text{인구밀도}) / 2 + \text{재정력지수} + \text{소득세할주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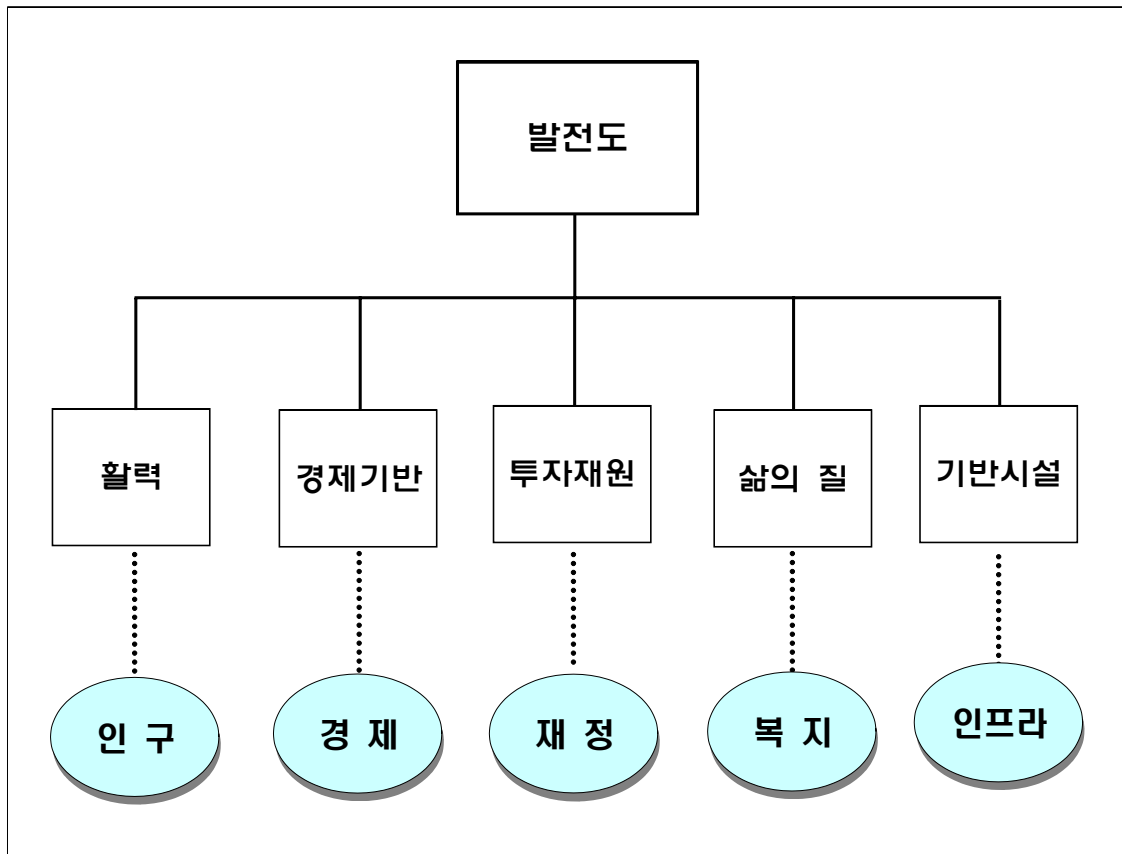
## 2. 전국 4개 유형 지역구분 기준 및 방법 (균형위)

### 1) 평가지표

#### □ 지역발전정도의 구성

- 2007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정책을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차등화시키는 구상을 하여 전국토를 4단계로 구분하고자 시도
- 이 때 지역발전정도는 경제적 측면에 가중치를 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지역발전을 의미
- 그에 따라 지역의 발전정도는 “인프라에 기초해 경제기반이 튼튼하고 재정이 풍부하여, 인구가 성장하고 복지가 양호한 정도”로 정의내리면서 복지 등 지역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

<그림 2> 발전정도의 구성



□ 4개 지역유형분류의 지표

- 5개 부문, 14개 지표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인구부문 3개, 산업·경제부문 4개, 재정부문 3개, 복지부문 2개, 인프라 부문 2개로 구성

<표 3> 4개 지역유형분류 지표

부문	지표	내용
인구 (3)	- 인구변화율	- 10년간 인구변화율
	- 인구밀도	- 면적 대비 인구수
	- 고령인구비율	- 총인구대비 65세이상인구
산업·경제 (4)	- 1인당 소득세할주민세	- 소득세할 주민세 징수액/인구
	-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평균
	- 1,000명당 총사업체 종사자수	- 1인이상 사업체 종사자총수/ 인구
	- 총사업체종사자수증가율	- 2001-2005년 사업체증가율
재정 (3)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요 대비 수입비중
	- 1인당 지방세징수액	- 지방세 징수 총액/인구
	- 지방세징수액증가율	- 4년간 지방세징수액 증가율
복지 (2)	- 1,000명당 의료병상수	- 의료병상 총수/인구
	-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수	- 공공도서관좌석수 총수/인구
인프라 (2)	- 도로율	- 총면적 대비 도로면적
	- 상하수도보급율	- 총인구 대비 급수인구, 총인구 대비 하수처리인구 평균

- 신활력지표에 비하여 측정 부문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각 부문별로 다양한 지표가 추가(복지부문, 인프라부문 추가)
- 또한 인구지표에서 노령화인구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인구가동이나 낙후의 결과로서 인구의 구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우리나라에서 인구증가는 대체로 사회적 이동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인구변화율과 고령인구는 다소 중복된 지표라 할 수 있음
- 플로우 지표와 스톡 지표를 동시에 적용하는 통합지표 구성
  - 추세를 반영하는 플로우 측면과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스톡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여 유사한 지표에 대하여 변화율과 기준연도 비율을 동시에 측정함에 따라 지표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유사중복 되는 경향이 존재

□ 지표의 출처

<표 4> 지표별 출처

구 분	지표	출처
인구부문	- 인구변화율	- 통계청 (1995-2005년)
	- 인구밀도	- 통계청(2005)
	- 고령인구비율	- 통계청(2005)
산업·경제 부문	- 1인당 소득세할주민세	- 행안부(2001-2005)
	-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 건교부(2005)
	- 1,000명당 총사업체종사자수 * 총사업체종사자수 증가율	- 2005 * 통계청(2001-2005)
재정부문	- 재정력지수	- 행안부(2001-2005)
	- 1인당 지방세징수액 * 지방세징수액 증가율	- 2005 * 행안부(2002-2005)
복지부문	- 1,000명당 의료병상수	- 보건복지부(2005)
	- 1,000명당 공공도서관좌석수	- 시도 통계연보(2005)
인프라부문	- 도로율	- 시도 통계연보(2005)
	- 상하수도보급율	- 환경부(2005)

2) 종합지수 산출방법

- 단위정상법(Unit Normal Scaling)에 의해 지표를 표준화

- 부문간의 가중치는 단순가중치 부여방식과 차등가중치 부여방식을 검토한 후 차등가중치 부여방식 채택
  - 부문간에 동일한 비중을 두는 방안과 지역발전도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인구, 산업경제, 재정부문에 비해 복지, 인프라 부문에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한 후, 차등가중치 방식을 채택
- 인구, 산업·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각각의 부문에 1 : 1 : 1 : 0.5 : 0.5 의 가중치 부여
  - 부문내 지표는 동일한 가중치 부여방식 채택

### 3. 개발촉진지구 선정 지표 및 방법 (국토부)

#### 1) 평가지표

##### □ 낙후성의 구성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제9조)
- 개발촉진지구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낙후지역형이 개발수준에 따른 지역 유형분류에 해당
  - 낙후지역형: 아래에 자세히 기술
  - 도농통합형: 도농통합시 중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를 대상으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농통합형과 낙후지역형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낙후지역형으로 지정 가능
  - 균형개발형: 광역개발권역 및 특정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



한 지역으로, 균형개발형과 낙후지역형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낙후 지역형으로 지정 가능

-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의 선정요건은 4가지임(시행령 제12조)
  -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 지역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 기타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 □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의 지표

- 지표를 부문 1과 부문 2로 구분하여 해당 부문에서 1개 이상이 전국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부문 1: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재정수입을 재정수요로 나눈 비율) 지표 중 1개 이상
  - 부문 2: 사업체 총 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인구 및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로보급률),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비율), 지역접근성 지표(기준지역의 인구수와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곱한 값을 양 지역간 거리와 접근소요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눈 비율) 중 1개 이상
- 선정지표 세부기준의 유효기간 (2006~2010) 매5년마다 결정
  - 동일한 시군구에는 1지구에 한하여 지정하나, 다만 인접 시군구에 새로이 지구를 지정하면서 사업의 연계성 및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일부지역 포함 가능

<표 5> 개발촉진지구의 지표

부문	지표	내용
부문1	인구밀도	인구/행정구역 면적
	연평균 인구변화율	34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변화율= (과거비교년도인구-기준년도인구)/과거년도에서 기준년도까지 기간×기준년도 인구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각 해당년도 부과세액의 총합으로 산정 (해당년도 각 시군부과세액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양도등개인소득 + 원천징수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일시재산 + 기타소득 <단 농업소득세, 법인세할 주민세는 제외>)
	재정력 지수	2003~2005 재정력지수 평균
부문2	노령화 지수	당해 시군의 65세 이상 인구수/14세 이하 인구수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총사업체종사자수/당해 시군구 인구수
	도로율	(시군구 <span style="float:right">법정도로연장/</span> $\sqrt{\text{기준년도인구} \times \text{기준년도 행정구역면적}}$ ) × 100
	지역접근성	대도시와 해당 시군구간의 인구를 곱한 것을 양 도시간 거리 및 접근소요시간으로 나눈 비율

□ 지표의 출처

<표 6> 지표의 출처

부문	지표	출처
부문1	인구밀도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2004)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자료(2004)
	연평균 인구변화율	통계청 인구주택센서스자료 (1970~2004)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2004)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2001~2003)
	재정력 지수	행정자치부 FY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03~2005)
부문2	노령화 지수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2004)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통계청 산업별 종사자수(2003), 시군구 주요통계(2003)
	도로율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2003)
	지역접근성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2004)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건설교통부 국토포털정보웹지도( <a href="http://www.land.go.kr">www.land.go.kr</a> )(2005)

## 2) 종합지수 산출방법

- 지표를 부문 1과 부문 2 등 각 부문에서 1개 이상이 전국 하위 30% 미만일 경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므로 종합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없음
  - 개별지표에 대한 30%미만 여부만 판단하면 됨
  - 그에 따라 과다하게 지정될 가능성이 존재

## 4. 낙후도 지표 (KDI)

### 1) 평가지표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낙후정도를 반영하는 지역낙후도 지수를 개발하여 사용
- 지역낙후도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는 건교부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사용하는 8개 지표를 활용
-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 인구, 경제, 기반시설 등 3가지 부문에서 8개 지표 산출
  - 경제부문에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보다는 산업지표를 적용하였으나 총사업체 대신에 제조업 종사자비율만 적용하여, 1차산업이 지배적인 지역들(농림수산업 지역)이 낙후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 존재
  - 대신 승용차등록대수를 소득의 대리지표로 보고 있으나 이는 자가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타당성이 적어짐

### 2) 종합지수 산출방법

- 8개 지표를 단위정상법에 의하여 표준화한 이후 가중치를 적용
- 전문가대상 AHP기법을 통하여 각 부문별 가중치 산출
  - 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한국정책학회 회원 대상으로 임의추출방식으로 총 170명 표본 선정
  - 총 74개 설문 취합, CR 0.2 이하 응답자인 44명을 대상으로 분석

○ AHP기법 결과 가중치는 다음과 같음

- 3대 부문: 경제(54.5%), 기반시설(32.2%), 인구(13.3%)
- 8개 지표: 재정자립도(29.1%), 도시적 토지이용율(14.2%), 제조업종사자비율(13.1%), 승용차등록대수(12.4%), 도로율(11.7%), 인구증가율(8.9%), 의사수(6.3%), 노령화지수(4.4%) 등

<표 7> KDI 지역낙후도지표의 지표와 출처

부문	지표	내용	자료출처
인구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노령화 지수	(65세이상/0~14세 인구)×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경제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세입 총계)×100(최근 3년간 평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제조업 종사자비율	(제조업종사자수/인구)×100	각 시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승용차 등록대수	(승용차등록대수/인구)×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기반시설	도로율	(법정 도로연장 / 행정 구역 면적)×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인구당 의사수	(의사수/인구)×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 행정구역 면적]×100	한국감정원, 지적통계연보

※ KDI의 낙후도 지수 산출은 사실상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개발 촉진지구 선정에 활용했던 지표를 그대로 사용한 것임

## 5. 검토 결과 및 종합

### □ 낙후지역 선정기준 관련 기존 지표들

<표 8> 4대 선정지표의 종합

기존 지표	부 문	지 표
신활력 지표 (3대부문 8개지표)	인 구	- 인구변화율
		- 인구밀도
	경 제	- 소득세할주민세
	재 정	- 재정력지수
4대 지역유형 분류 (5대부문 14개지표)	인구	- 인구변화율 - 인구밀도 - 고령인구비율
	산업·경제	- 1인당 소득세할주민세 - 1,000명당 총사업체 종사자수 -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 총사업체종사자수증가율
	재정	- 재정력지수 - 지방세징수액증가율 - 1인당 지방세징수액
	복지	- 1,000명당 의료병상수 -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수
	인프라	- 도로율 - 상하수도보급율
개발촉진 지구(낙후 지역형) (2대부문 8개지표)	부문1	- 인구밀도 -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 연평균 인구변화율(34년) - 재정력 지수(3년 평균)
	부문2	- 노령화 지수 - 도로율 -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 지역접근성
KDI (3대부문 8개지표)	인구	- 인구증가율 - 노령화 지수
	경제	- 재정자립도 - 제조업 종사자비율 - 승용차 등록대수
	기반시설	- 도로율 - 인구당 의사수 -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 □ 종합지수 산출방법 비교

- 신활력지표, 4대 지역유형구분, KDI 낙후도 지수 등은 각 지표와 부분의 서로 다른 단위(scale)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위정상법에 의한 표준화값을 사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
- 하지만, 서로 상이한 지표간 가중치를 사용
  - 신활력지표: 1:1:1의 단일 가중치를 사용
  - 4대 지역유형구분: 인구:산업경제:재정:복지:인프라 = 1:1:1:0.5:0.5
  - KDI 낙후도 지수: AHP기법에 따라 가중치 적용
- 한편, 개발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종합지수를 산출하지 않음
  - 부문별로 하위 30%미만에 해당될 경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 VI.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 1. 선정기준

#### 1) 지표의 구성기준

##### □ 대표 지표의 선정

- 낙후도 측정을 위해 인구, 고용 및 소득, 재정 부문의 지표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개발촉진지구의 경우 부문 1과 부문2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낙후지역 선정요건인 부문 1의 지표 차원에서 미달되면서 산업이나 지역기반시설 등의 보완 지표가 미달된 경우를 지정

##### □ 통계적 유의성 확보

- 적합한 선정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적합한 선정지표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음
  - 객관성, 통계 생산의 정기성, 통계검증의 용이성, 시대변화 반영

##### □ 대리변수의 생산

- 외국의 경우 낙후지역 선정을 위해 이상적인 지표가 1인당 GRDP나 실업률 등임을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군·구 수준에서 이들 지표에 대한 통계치가 산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지표를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적절한 대리지표의 개발 필요

## 2) 지표의 선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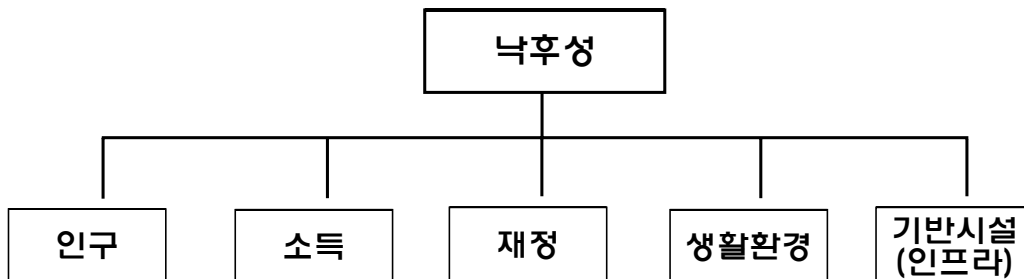
### □ 지표의 선정과정

- 성장촉진지역의 선정 과정은 다음의 과정을 거침
  - 1단계(대표 부문의 선정): 성장촉진지역의 법적 규정과 이론적 개념을 감안하여 부문을 선정
  - 2단계(지표의 선정): 부문별 구체적인 지표를 선정하되 통계적 유의성 확보와 대리변수의 생산을 감안
  - 3단계(지표 시뮬레이션): 여러 안의 지표를 평가

### (1) 1단계(대표 부문의 선정)

- 성장촉진지역의 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성장촉진지역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음
  - ①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할 것
  - ②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
  - ③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특별한 배려는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 기반시설을 의미

<그림 3>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의 부문



- 이에 덧붙여 지역의 발전수준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소득, 인구, 재정 상태를 제시



- 따라서, 성장촉진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과 함께 국가 등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사회간접자본 등의 확충 정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 2단계(지표의 선정)

### □ 선정지표의 전제조건

- 객관성, 통계 생산의 정기성, 통계검증의 용이성, 시대변화 반영, 중복성

<표 9> 기존 지표의 적합성 여부 검토

부문	지표	적합성 여부
인구	인구변화율	적합
	인구밀도	부적합(중복성)
	고령인구비율	부적합(통계생산의 비정기성, 센서스자료)
경제	소득세할 주민세	적합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부적합 (객관성 결여)
	천인당 종사자수	부적합 (중복성)
	총사업체 종사자수 증가율	부적합(객관성 결여, 중복성)
	제조업종사자 비율	부적합(객관성 부족, 2차산업 위주)
	승용차 등록대수	부적합(시대변화반영 미흡)
재정	재정력지수	적합
	재정자립도	부적합(객관성 결여)
	1인당 지방세징수액	부적합
	지방세징수액증가율	부적합(중복성)
의료복지	천인당 의료병상수	부적합(객관성 결여)
	천인당 의사수	적합
	천인당 공공도서관 좌석수	적합
기반시설 (인프라)	지역접근성	부적합(객관성 결여, 낙후지역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으나 필연적인 것은 아님)
	도로율	적합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부적합(시대변화반영 미흡)
	상하수도율	적합

- 4대 지역유형구분에서는 의료의 질을 감안하기 위하여 천인당 의료 병상수를 사용하였으나 의료병상수는 개인병원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종합병원이 존재하는 지역이 종합병원은 없으나 개인병원이 많은 지역에 비하여 월등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존재
  - 따라서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에서는 더욱 균등화된 지표인 의사수를 사용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
- 공시지가 평균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 계획이나 정부가 지역간 형평을 위하여 시장의 흐름과 반하기도 하는 균형개발사업을 인위적으로 추진할 때 공시지가 평균이 돌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
- KDI의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제조업 종사자수 등은 2차산업과 3차산업 중심적인 발상으로, 제1차산업으로 인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이 낙후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적합한 지표 추출 결과**

<표 10> 적합한 지표와 자료출처

구분	지 표	출 처	계산절차
인구 부문	단순인구변화율 (36년)	통계청	$\{(2006\text{년 인구} - 1970\text{년 인구}) / (1970\text{년 인구} \times 36\text{년})\} \times 100$
경제 부문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5년 평균)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text{소득세할주민세 5년 총합}(2002\sim 2006\text{년}) / 5\} / 2006\text{년 인구}$
재정 부문	재정력지수 (5년 평균)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재정력지수 5년 총합(2002~2006년) / 5
복지 부문	의사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수	시도통계연보	공공도서관좌석수 / 2006년 인구 $\times 1,000$
	읍면동당 사설학원 수	시도통계연보	시군구 사설학원 수 / 해당 지자체 읍면동 수
인프라 부문	도로율	시도통계연보	도로면적 / 총면적
	상하수도 보급율	환경부	-

주: 모든 지표의 공간적 단위는 시군구이며, 시간적 기준은 2006년 현재임

### (3) 3단계(지표 시뮬레이션)

#### □ 부문의 포함 여부

- 법적 요건에 따르면 복지부문과 인프라 부문이 성장촉진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나 교육에서 공공서비스 보다는 사적인 서비스로 해결되는 경향이 높음
- 그러므로 복지부문과 소득은 상호 상관관계가 높아 두 부문을 모두 포함시켰을 경우 중복성의 우려가 존재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부문과 인프라부문의 가감을 통하여 여러 안을 검토하도록 함
-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단순성을 추구하여 부문별 가중치는 동등 가중치 사용하고 종합지수 산출에 있어서 단위정상법 사용

#### □ 검토 안(6개안)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들로 구성된 5개 안과 신활력지표를 이용한 1개 안을 상호 비교 검토
  - 신활력지표의 경우 2006년 자료로 업데이트
- 검토안
  - 대안 1: 인구, 경제, 재정, 복지, 의료 등 5개 부문 모두 포함
  - 대안 2: 복지부문 제외
  - 대안 3: 의료부문 제외
  - 대안 4: 복지부문과 의료부문 제외
  - 대안 5: 복지에서 의료복지만 포함

<표 11> 6개 대안의 사용 지표

구분	지 표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대안 5	대안 6
인구 부문	단순인구변화율 (36년)	○	○	○	○	○	○
	인구밀도	×	×	×	×	×	○
산업 부문	소득세할주민세 (3년 평균)	×	×	×	×	×	○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5년 평균)	○	○	○	○	○	×
재정 부문	재정력지수 (3년 평균)	×	×	×	×	×	○
	재정력지수 (5년 평균)	○	○	○	○	○	×
복지 부문	의사수	○	×	○	×	○	×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수	○	×	○	×	×	×
	읍면동당 시설학원 수	○	×	○	×	×	×
인프라 부문	도로율	○	○	×	×	○	×
	상하수도 보급율	○	○	×	×	○	×

주: 각 부문에 1의 가중치를 적용함

## 2. 선정결과

- 선정기준: 6개 안에서 상호중복되어 있는 지역이 많은 대안을 가장 적합한 성장촉진지역 선정지표로 선택
  - 즉, 여러 지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들을 가장 많이 포괄한 대안이 선정기준의 대표성을 띤다고 전제
- 점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 6개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개수에는 6점
  - n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개수에는 n점
- 그 결과, 복지부문을 전부 제외하고 인구, 경제, 재정, 인프라 등 4가지 부문만을 측정한 대안 2가 가장 높은 점수를 띠었음
  - 6점 만점에 대안 2가 5.49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복지에서 의료복지만 포함한 대안 5가 5.47점으로 높음

$$\text{점수} = [(6\text{개안에 포함된 지역의 개수}) \times 6] + [(5\text{개안에 포함된 지역의 개수}) \times 5] + [(4\text{개안에 포함된 지역의 개수}) \times 4] + [(3\text{개안에 포함된 지역의 개수}) \times 3] + [(2\text{개안에 포함된 지역의 개수}) \times 2] + [(1\text{개안에 포함된 지역의 개수}) \times 1]$$

<표 12> 대안별 점수분포(빈도)

단위: 개(%)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대안 5	대안 6
6점	51 (72.9)	51 (72.9)	51 (72.9)	51 (72.9)	51 (72.9)	51 (72.9)
5점	5 (7.1)	6 (8.6)	3 (4.3)	5 (7.1)	6 (8.6)	5 (7.1)
4점	6 (8.6)	9 (12.9)	7 (10.0)	7 (10.0)	9 (12.9)	6 (8.6)
3점	3 (4.3)	4 (5.7)	3 (4.3)	2 (2.9)	3 (4.3)	3 (4.3)
2점	3 (4.3)	0 (0.0)	2 (2.9)	4 (5.7)	1 (1.4)	4 (5.7)
1점	2 (2.9)	0 (0.0)	4 (5.7)	1 (1.4)	0 (0.0)	1 (1.4)
평균	5.31	5.49	5.23	5.34	5.47	5.33

## V. 성장촉진지역 지표 활용 방안

### 1.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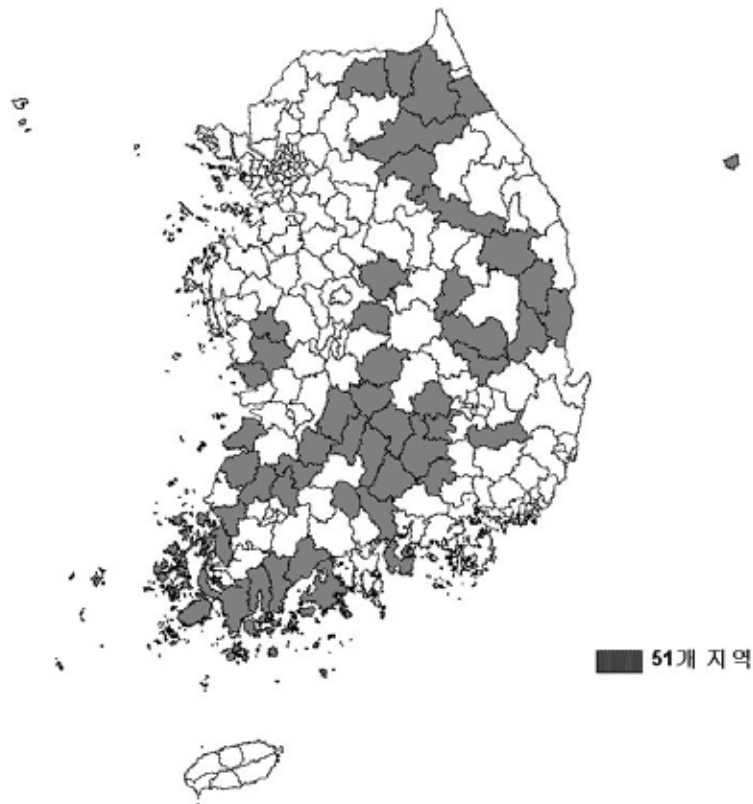
#### □ 분석결과 종합

- 6개 대안을 232개 시·군·구에 적용하였을 때, 51개 시군구를 공통적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분류하였음
  - 51개 지역 중 전라남도에서 13개 지역이, 경상북도에서 11개 지역이 선정

<표 13> 6개 모든 대안에 포함되는 시군구

구 분	해당 시·군	개수
강원도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7
충청북도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3
충청남도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3
전라북도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7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13
경상북도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1
경상남도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7

<그림 4> 6개 대안에서 공통으로 선정된 지역(51개 지역)



<표 14> 6개 대안별 해당 시군구(상기 51개 지역 제외)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대안 5	대안 6 (신활력)	중복개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				1
대구광역시	서구				○			1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		4
	옹진군	○	○			○		3
대전광역시	동구			○				1
경기도	연천군			○				1
강원도	고성군	○	○		○	○	○	5
	삼척시				○		○	2
	철원군		○		○	○	○	4
	태백시			○	○		○	3
	평창군	○	○		○	○	○	5
충청북도	단양군		○			○	○	3
	옥천군			○	○	○	○	4
	증평군				○		○	2
	청원군	○						1
충청남도	금산군	○	○	○		○	○	5
	논산시	○	○	○				3
	당진군	○						1
	예산군	○	○	○		○		4
	태안군	○				○		2
	홍성군	○	○	○	○			4
전라북도	김제시		○	○	○	○	○	5
	남원시	○		○	○		○	4
	완주군	○	○	○		○		4
	정읍시			○	○		○	3
전라남도	곡성군	○	○		○	○	○	5
	나주시		○		○	○	○	4
	영광군	○		○				2
	영암군						○	1
	화순군				○		○	2
경상북도	문경시				○		○	2
	상주시		○		○	○	○	4
	영천시			○				1
	울진군	○	○			○		3
경상남도	고성군	○	○	○	○	○		5
	밀양시	○		○				2
	창녕군		○		○	○	○	4
	함안군	○	○	○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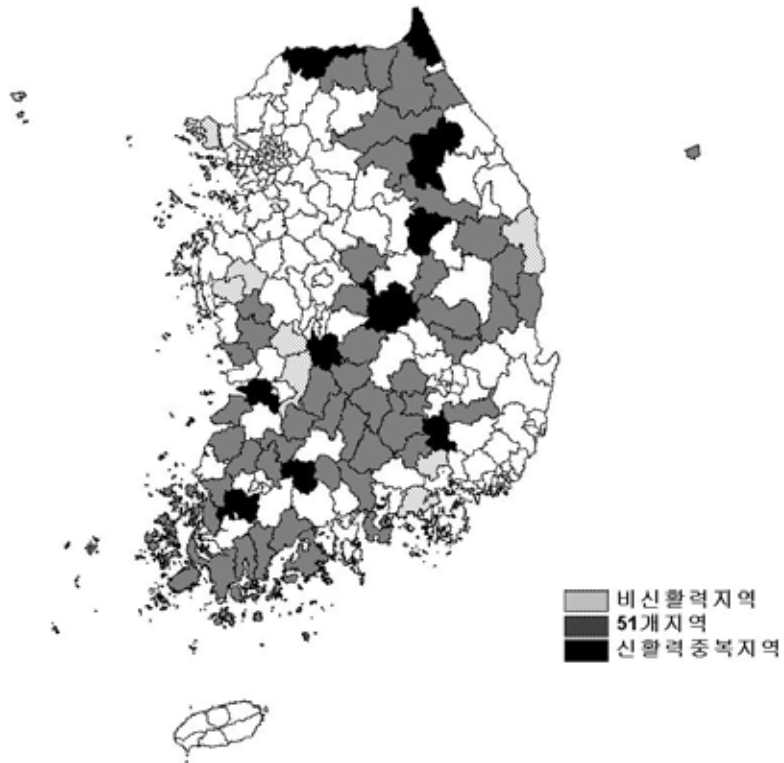
□ **신활력지표와의 비교**

- 복지부문을 제외한 대안2와 복지에서 의사수만 포함시킨 대안 5를 신활력지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신활력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다음과 같음
  - 대안 2: 강화군, 용진군, 논산시, 홍성군, 완주군, 울진군, 고성군, 함안군
  - 대안 5: 강화군, 용진군, 태안군, 완주군, 울진군, 고성군, 함안군
- 신활력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나 새로운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삼척시, 태백시, 증평군, 남원시, 정읍시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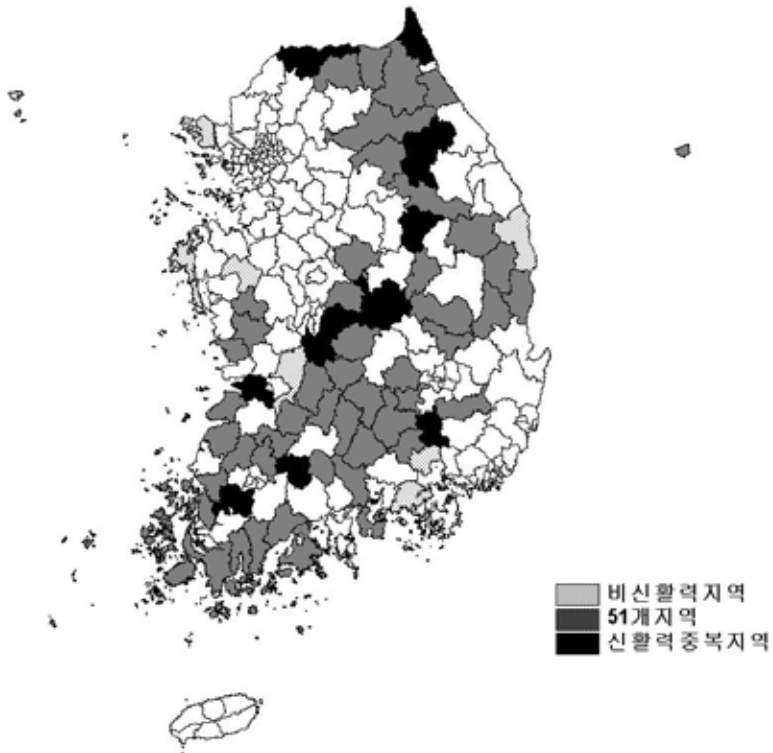
구 분		대안 2	대안 5	대안 6 (신활력 지표)	구 분	대안 2	대안 5	대안 6 (신활력 지표)	
인천광역시	강화군	○	○		전라북도	김제시	○	○	○
	용진군	○	○			남원시			○
강원도	고성군	○	○	○		완주군	○	○	
	삼척시			○		정읍시			○
	철원군	○	○	○	전라남도	곡성군	○	○	○
	태백시			○		나주시	○	○	○
	평창군	○	○	○		영암군			○
충청북도	단양군	○	○	○		화순군			○
	옥천군		○	○		경상북도	문경시		
	증평군			○	상주시		○	○	○
충청남도	금산군	○	○	○	영천시				
	논산시	○			울진군		○	○	
	예산군	○	○		경상남도		고성군	○	○
	태안군		○			밀양시			
	홍성군	○				창녕군	○	○	○
				함안군		○	○		



<그림 5> 대안 2와 신활력지역의 비교



<그림 6> 대안 5와 신활력지역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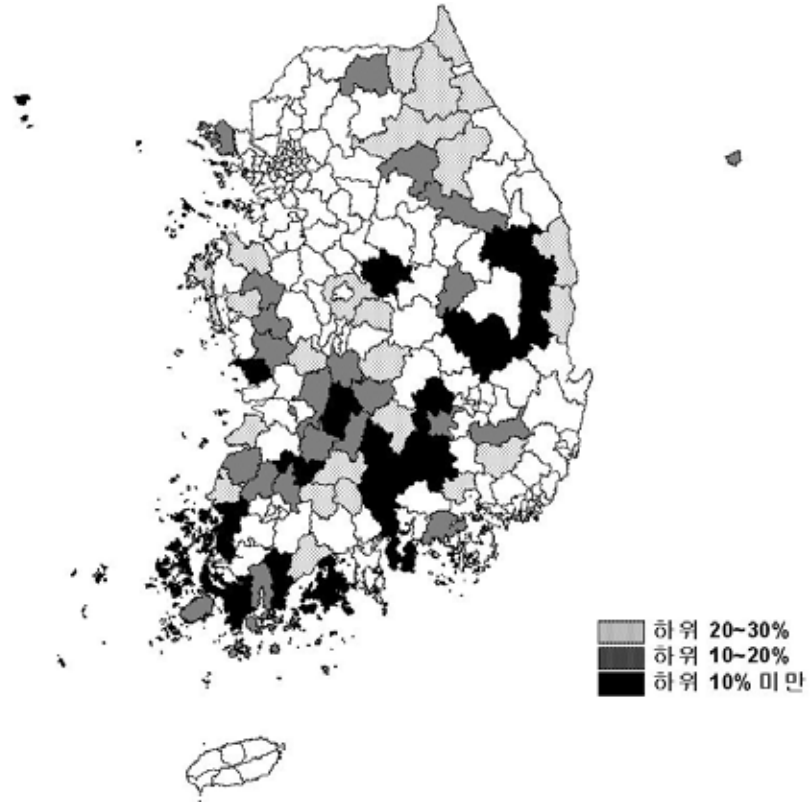
## 2. 성장촉진지역 활용 방향

- 지역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선정하고 232개 시군구에 대한 데이터를 적용하여 그 중 성장촉진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의 정당성이 강화됨
- 성장촉진지역의 선정기준은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계획연도(5년)와 연동시켜 활용
- 또한 지역발전특별법 4조(지역발전5개년계획)와 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에서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계획과 시책 개발을 의무화하고 있음
  -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다양한 부문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경제 및 향토자원개발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개정법안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성장촉진지역의 선정기준은 경제, 재정, 산업, 복지, 인프라 등의 시책을 수립, 추진함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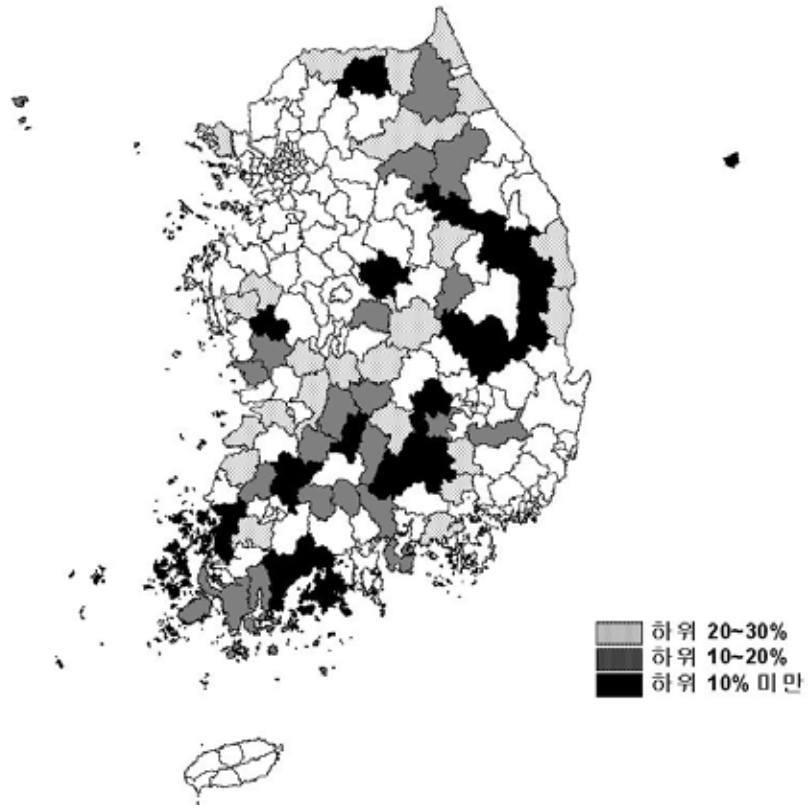
# <부록>

## 부록 1.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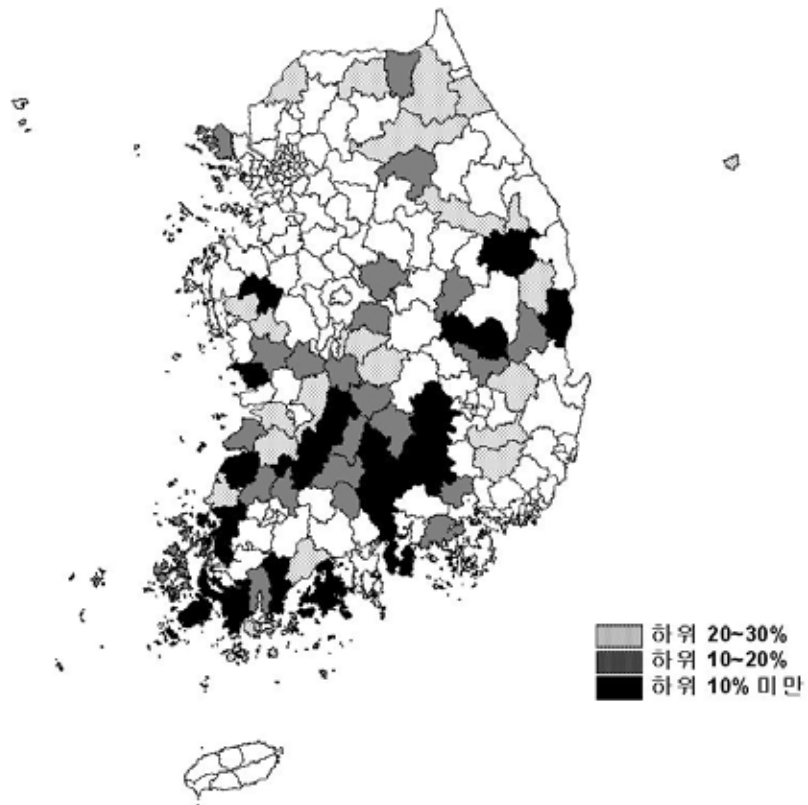
<그림 7> 대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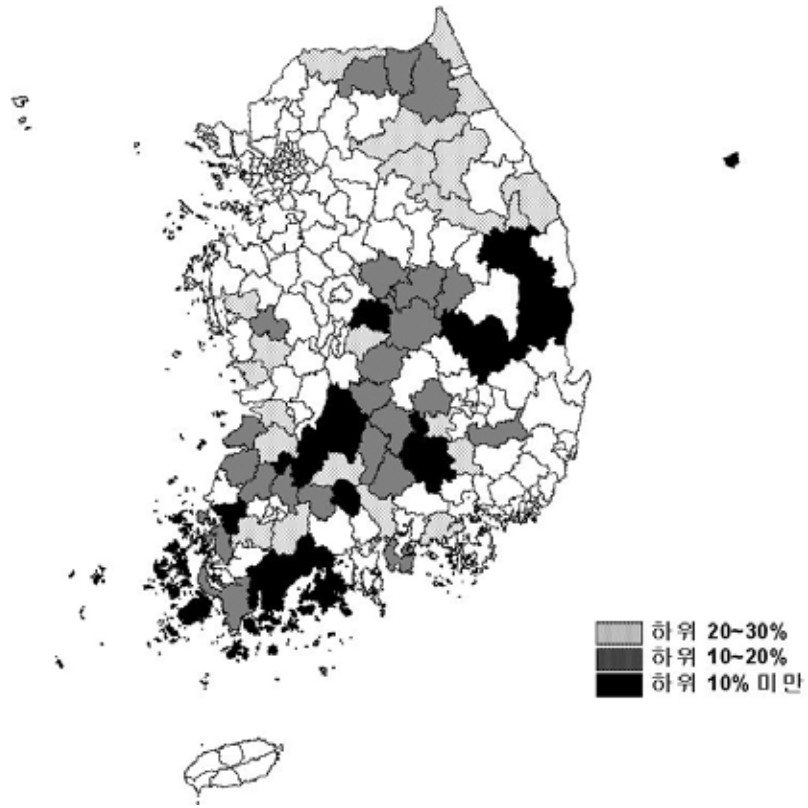
<그림 8> 대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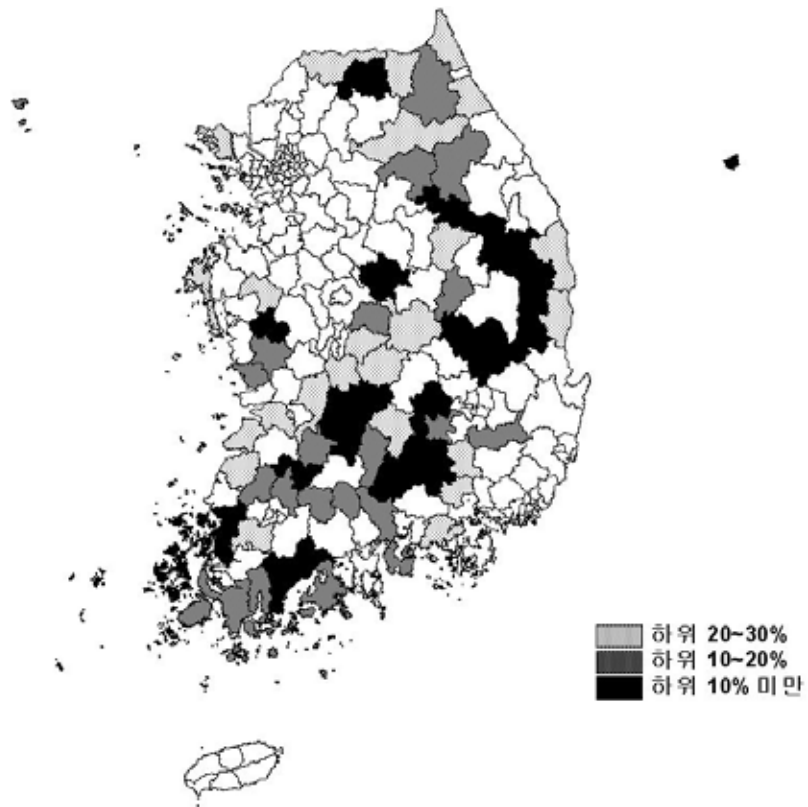
<그림 9> 대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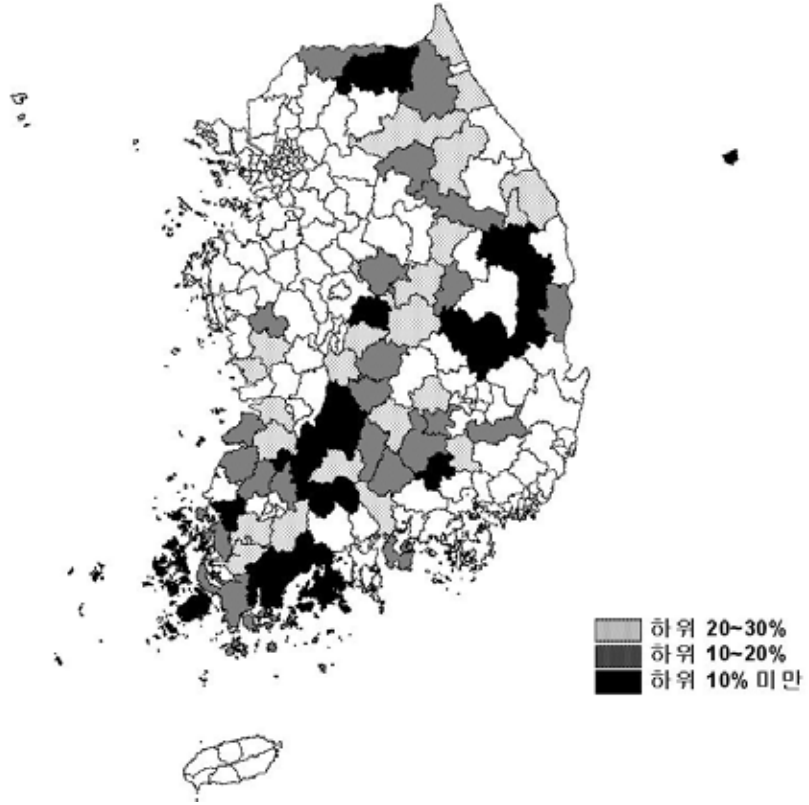
<그림 10> 대안 4



<그림 11> 대안 5



<그림 12> 대안 6



□ 대안 1

순위	지역	순위	지역
232	봉화군	197	무주군
231	합천군	196	울릉군
230	의령군	195	강화군
229	장흥군	194	예산군
228	산청군	193	완주군
227	성주군	192	강진군
226	남해군	191	횡성군
225	청송군	190	고성군(경남)
224	군위군	189	금산군
223	신안군	188	청도군
222	의성군	<u>20%(46개)</u>	<u>완도군</u>
221	함양군	187	보은군
220	옹진군	186	보성군
219	함평군	185	논산시
218	하동군	184	인제군
217	무안군	183	구례군
216	순창군	182	거창군
215	영양군	181	울진군
214	서천군	180	영동군
213	괴산군	179	평창군
212	해남군	178	함안군
211	진안군	177	영덕군
<u>10%(23개)</u> 210	<u>고흥군</u>	176	양구군
209	부여군	175	홍천군
208	진도군	174	곡성군
207	임실군	173	홍성군
206	청양군	172	부안군
205	고창군	171	남원시
204	고령군	170	양양군
203	장성군	169	태안군
202	담양군	168	밀양시
201	영월군	167	영광군
200	화천군	166	당진군
199	장수군	165	청원군
198	예천군	164	<u>고성군(강원)</u>
		<u>30%(70개)</u> 163	

□ 대안 2

순위	지역	순위	지역
232	봉화군	197	진도군
231	영양군	196	하동군
230	신안군	195	옹진군
229	청송군	194	부여군
228	군위군	193	인제군
227	장흥군	192	구례군
226	합천군	191	곡성군
225	산청군	190	고령군
224	의성군	189	서천군
223	성주군	188	평창군
222	청양군	20%(46개)	횡성군
221	화천군	187	영동군
220	보성군	186	완주군
219	순창군	185	고창군
218	무안군	184	울진군
217	울릉군	183	상주시
216	의령군	182	홍천군
215	괴산군	181	영덕군
214	장수군	180	고성군(경남)
213	함평군	179	금산군
212	고흥군	178	나주시
211	영월군	177	양양군
10%(23개) 210	담양군	176	거창군
209	진안군	175	강화군
208	완도군	174	예산군
207	강진군	173	양구군
206	해남군	172	철원군
205	무주군	171	김제시
204	남해군	170	고성군(강원)
203	청도군	169	논산시
202	함양군	168	단양군
201	임실군	167	부안군
200	보은군	166	홍성군
199	예천군	165	창녕군
198	장성군	164	함안군
		30%(70개) 163	



□ 대안 3

순위	지역	순위	지역
232	의령군	197	청송군
231	남해군	196	군위군
230	함양군	195	괴산군
229	고창군	194	무주군
228	합천군	193	강진군
227	장흥군	192	금산군
226	함평군	191	담양군
225	하동군	190	논산시
224	진도군	189	횡성군
223	봉화군	188	함안군
222	진안군	20%(46개)	보은군
221	임실군	187	완도군
220	순창군	186	영동군
219	산청군	185	청도군
218	해남군	184	울릉군
217	성주군	183	영월군
216	서천군	182	인제군
215	고흥군	181	청양군
214	의성군	180	연천군
213	영덕군	179	홍성군
212	무안군	178	정읍시
211	예산군	177	옥천군
10%(23개) 210	고령군	176	태백시
209	신안군	175	화천군
208	부여군	174	영천시
207	거창군	173	영양군
206	예천군	172	밀양시
205	장수군	171	보성군
204	장성군	170	영도구
203	부안군	169	홍천군
202	강화군	168	김제시
201	구례군	167	양양군
200	남원시	166	완주군
199	고성군(경남)	165	동구(대전)
198	양구군	164	영광군
		30%(70개) 163	

□ 대안 4

순위	지역	순위	지역
232	신안군	197	양구군
231	영양군	196	장성군
230	장수군	195	화천군
229	순창군	194	곡성군
228	진안군	193	괴산군
227	봉화군	192	상주시
226	보성군	191	영동군
225	임실군	190	인제군
224	구례군	189	성주군
223	강진군	188	거창군
222	장흥군	20%(46개)	문경시
221	청송군	187	영월군
220	의성군	186	김제시
219	진도군	185	정읍시
218	고흥군	184	하동군
217	함평군	183	고령군
216	의령군	182	남원시
215	완도군	181	나주시
214	울릉군	180	화순군
213	군위군	179	옥천군
212	합천군	178	부여군
211	보은군	177	횡성군
10%(23개) 210	영덕군	176	철원군
209	해남군	175	서천군
208	고창군	174	증평군
207	함양군	173	양양군
206	남해군	172	창녕군
205	청도군	171	홍천군
204	청양군	170	서구(대구)
203	예천군	169	삼척시
202	부안군	168	고성군(경남)
201	산청군	167	고성군(강원)
200	무안군	166	평창군
199	무주군	165	태백시
198	담양군	164	홍성군
		30%(70개) 163	

□ 대안 5

순위	지역	순위	지역
232	영양군	197	옹진군
231	봉화군	196	인제군
230	신안군	195	하동군
229	청송군	194	해남군
228	군위군	193	구례군
227	산청군	192	고령군
226	합천군	191	곡성군
225	장흥군	190	평창군
224	성주군	189	횡성군
223	의성군	188	부여군
222	청양군	20%(46개)	서천군
221	화천군	187	영동군
220	울릉군	186	완주군
219	순창군	185	양양군
218	의령군	184	고창군
217	괴산군	183	울진군
216	장수군	182	영덕군
215	함평군	181	고성군(경남)
214	보성군	180	양구군
213	영월군	179	고성군(강원)
212	무안군	178	금산군
211	진안군	177	단양군
10%(23개) 210	무주군	176	강화군
209	완도군	175	거창군
208	강진군	174	철원군
207	함양군	173	상주시
206	남해군	172	홍천군
205	임실군	171	예산군
204	담양군	170	부안군
203	고흥군	169	함안군
202	진도군	168	나주시
201	보은군	167	김제시
200	청도군	166	태안군
199	예천군	165	창녕군
198	장성군	164	옥천군
		30%(70개) 163	

□ 대안 6

순위	지역	순위	지역
232	영양군	197	합천군
231	신안군	196	무안군
230	진안군	195	산청군
229	봉화군	194	영월군
228	청송군	193	담양군
227	장수군	192	남해군
226	구례군	191	무주군
225	순창군	190	횡성군
224	함평군	189	영동군
223	진도군	188	철원군
222	의성군	20%(46개)	고령군
221	임실군	187	문경시
220	강진군	186	성주군
219	보성군	185	상주시
218	장흥군	184	거창군
217	화천군	183	김제시
216	군위군	182	옥천군
215	울릉군	181	화순군
214	양구군	180	증평군
213	보은군	179	부여군
212	의령군	178	나주시
211	곡성군	177	하동군
10%(23개) 210	고흥군	176	남원시
209	완도군	175	정읍시
208	괴산군	174	태백시
207	청도군	173	단양군
206	예천군	172	홍천군
205	청양군	171	창녕군
204	영덕군	170	평창군
203	부안군	169	양양군
202	장성군	168	삼척시
201	고창군	167	서천군
200	함양군	166	영암군
199	인제군	165	고성군(강원)
198	해남군	164	금산군
		30%(70개) 163	

## 부록 2. 외국의 낙후지역 선정기준 종합

국 가	선정지표
EU	· 평균 1인당 GDP가 EU 전체의 75% 이하
일본	· 인구 : 인구변화율, 고령자비율 · 재정 : 재정력 지수
프랑스	· 주요기준 : 실업률, 1인당 GDP, 인구밀도 등 인구학적 기준 · 참고사항 : 지역의 경제성장 전망, 도시화의 정도, 3차산업의 성장 가능성
영 국	· 인구, 고용율, 실업율, 제조업 의존도
독 일	· 고용지표(가중치 50%), 1인당소득(가중치 40%), 인프라지표(가중치 10%)
미 국	· 실업률, 개인의 소득, 인구감소 등
네덜란드	· 실업률, 소득,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오스트리아	· 실업률, 1인당 GRDP
벨기에	· 주요기준 : 실업률, 1인당 GRDP · 참고사항 : 고용추이, 산업구조, 인구이동, 기타 인구학적 요인들
핀란드	· 1인당 GDP, 실업률, 인구이동, 산업구조, 인구밀도, 기후
포르투갈	· 인구구조, 생활수준, 경제활동의 현황과 구조, 접근성
스페인	· 1인당 GDP, 실업률
스웨덴	· 실업률, 고용참가율, 인구이동률

## 참고문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12.15,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10.1), 「지역발전지수(RDI) 개발 사례와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방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7.12),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승준·최진수(2001), “우리나라 낙후지역선정의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4호
- 이원섭·박양호(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 이재준, 이원호, 이자원, 이상도, 2008, “개발촉진지구 평가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제42권 1호.
- 이원호, 주성재, 이재준, 2006, “우리나라 낙후지역 지원제도의 효과분석: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사례연구”, 「지리학연구」 제40권 1호.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0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연구」